

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

□ 온라인 학술대회 정의

-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소재한 참가자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규약 제3조 제8항에 정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경우(이하 “온라인 학술대회”), 본 세부 기준에 따른 지원요건과 절차가 공정경쟁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됨.
- 참가자들이 장소적으로 집합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학술대회와 온라인 학술대회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함.
 - ※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단방향이라도 온라인 송출이 포함된 경우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기준을 준수해야 함

□ 지원 연장 목적

-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한시적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정부의 방역지침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학술대회 비대면 개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한시적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 함.

□ 연장기간

- 2021년 7월 1일 ~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(1년 연장)

□ 관련규정

1) 공정경쟁규약 제8조 (학술대회 개최·운영 지원)

-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·단체가 주관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을 기부, 식음료 제공, 기념품 제공, 부스 임대,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.
 1. 「의료법」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,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「약사법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·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·인정한 학회(해외학회 포함), 학술기관·단체 또는 연구기관·단체
 2.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정한 학회(해외학회 포함), 학술기관·단체 또는 연구기관·단체

2) 공정경쟁규약 제15조 (전시·광고) 및 세부운영기준 제11조 (전시·광고)

□ 지원대상

-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
 - ※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‘산하단체’ 또는 ‘지회’, ‘개별요양기관’: 온라인 광고 한시적 허용
 - ※ 단일 심포지엄, 전공의 교육, 연수강좌 등 : 온라인 광고 한시적 허용
- 「의료법」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,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「약사법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·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·인정한 학회(해외학회 포함), 학술기관·단체 또는 연구기관·단체
-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정한 학회(해외학회 포함), 학술기관·단체 또는 연구기관·단체

□ 연장 지원

- (온라인 국내학술대회)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
 - 신청기간 : 학술대회 개최 전 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신청, 승인된 심의내용에 따라 진행
 - ※ 단, 오프라인 국내학술대회 사전심의 승인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 시 예산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, 재심의 신청
- (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)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
 - ※ 외국인 참가자 인정 : 내한→온라인 참석 가능(공정위·복지부 유권해석)
- (광고) 온라인 국내·국제학술대회 공통 지원 기준

구분		연장 지원
관련 규약		공정경쟁규약 15조(전시·광고), 세부운용기준 11조(전시및광고)
형태	온라인	(1) 온라인 광고 정의 본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‘온라인광고’란 ① 온라인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학회 등에 대하여 ② 온라인 학술대회 전용 매체를 활용하여 ③ 이미지, 영상, 전자문서, 또는 지나가는 문자 형태 등으로 ④ 회사명, 로고 및 제품명 등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함
금액 제한		(1)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AND 참석자 800명 이상 : 건당 최대 300만원 (최대 2건 600만원) (2)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일 심포지엄, 전공의 교육, 연수 강좌 : 건당 최대 200만원 (최대 2건 400만원)

<p>금액 제한</p>	<p>(3) 개별 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, 개별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일 심포지엄, 전공의 교육, 연수강좌 : 건당 최대 100만원 (최대 2건 200만원)</p> <p>※ 참석자 수는 전년도 개최한 정기 학술대회 참석자 수 (ex 21년 학술대회 개최시 20년 참석자) 기준, 전년도 학술대회 실적이 없는 경우 전전년도 실적 준용</p>
<p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회사의향</p>	<p>학회 등 주최사</p> <p>(1) 광고 지원 최소 요건 ① 보건의료전문가 참석자 기준 - 학술단체 및 개별 요양기관 : 50명이상 / 희귀질환학회 : 25명 이상 ② Agenda 및 행사시간 기준 : 학술 관련 Agenda 3시간 이상</p> <p>(2) 광고 지원 수 ① 학회 : 지원 회사 수 최대 40개사 / 광고 합산 최대 60개 ② 개별 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, 요양기관 (연 1회) : 광고 합산 최대 30개</p> <p>(3) 온·오프라인 병행시 온라인 지원 기준 적용 ※ 예외사항 : 초록집 광고 숫자는 위의 수량에 합산하지 않음</p>
	<p>지원사</p> <p>(1) 회사당 광고 2개까지 지원 가능 (2) 한 회사는 규약 제8조에 따른 학술대회 개최, 운영지원 기부금과 제15조의 광고·부스비를 중복하여 지원 불가 ※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</p>
	<p>공통</p> <p>(1) 온라인 광고비 책정은 규약의 형태별 금액 한도 준하여 운영 ※ 규약의 광고금액 한도 기준(세금 제외) · 예 - 사이트 광고 : 월 100만원, 전자문서 : 70만원, 인쇄물(학회) : 표1,4 200만원, 표2 150만원, 표3 100만원</p>

[별첨]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 변경대비표 요약

구분		현행	연장	비고
온라인 학술대회 정의		없음	-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소재한 참가자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규약 제 3조 제 10항에 정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경우 - 참가자들이 장소적으로 집합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학술대회와 온라인 학술대회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함	온라인 학술대회 정의 명확화
적용기간		20년 7월 ~ 21년 6월	21년 7월 ~ 22년 7월 (1년 연장)	
지원대상		- 의협/의학회 회원학회 (공식 산하단체) 460개 단체의 정기 학술대회	- 현행 지원단체 + (광고) 산하 단체, 지회, 요양기관 포함 - 현행 학술대회 + 단일 심포지엄, 전공의 교육, 연수강좌 포함	지원대상 확대
광고 금액	의협/의학회 회원학회	- 건당 최대 200만원 (최대 2건 400만원)	- 건당 최대 200만원 (최대 2건 400만원)	학회 규모 및 참석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
	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	지원 없음	- 건당 최대 100만원 (최대 2건 200만원)	
	요양기관	지원 없음	- 건당 최대 100만원 (최대 2건 200만원)	
	예외사항	없음	- 의협/의학회 회원학회 중 전년도 학술대회 참석자 수 800명 이상인 경우: 300만원 (최대 2건 600만원)	
광고 지원 최소 요건	참석인원	없음	- 학술단체 및 요양기관: 50명 - 희귀질환소수학회: 25명	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개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요건 마련
	Agenda		- 학술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3시간	
지원 광고 개수 및 형식	의협/의학회 회원학회	- 지원 회사 수: 최대 40개 회사 - 광고 합산 개수: 최대 60개 - 회사당 광고 & 부스 각 1건씩 지원 가능 (최대 2건 지원)	(의협/의학회 회원학회) - 지원 회사 수: 최대 40개 회사 - 광고 합산 개수: 최대 60개 - 회사당 광고 2건 지원 가능 (최대 2건 지원)	- 학술대회 규모가 작은 개별학회 산하단체, 지회 또는 요양기관의 경우 차등 지원
	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, 요양기관	지원 없음	- 지원회사: 연 1회 지원 - 학술대회당 광고 합산개수: 최대 30개 - 회사당 광고 2건 지원 가능 (최대 2건 지원)	- 온라인의 경우 광고와 부스에 대한 구분 어렵고, 효과 차이 없음.